

「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금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,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
- 취득시점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나.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(안 제6조)

- 감면기간을 각 7년과 3년으로 조정하고 제3호 및 제4호 추가

다.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
- 취득시점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라.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- 감면기간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개정내용은
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
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취득시점 및
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
2019. 12. 31일에서 2022. 12.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이며,
- 관계법령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의
“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정”에 따라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“10년””을 ““7년””으로, ““4년””을 ““3년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“6년””을 ““5년””으로, ““4년””을 ““3년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

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다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"5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<신 설>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"3년"을 "6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

---. -----

1. -----

"7년"----- "3년"-----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"5년"을 "7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3. -----

----- "5년"-----
--- "3년"-----.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"3년"을 "5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-----

